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1

발의연월일: 2021. 8. 5.

발 의 자:이정문・기동민・김병기

김철민 • 도종환 • 문진석

민형배 · 안민석 · 이용빈

임호선 · 황운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미성년인 자녀로"를 "25세 미만인 자녀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를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이전할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제11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②
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u>미성년</u>	25세 미
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	<u>만인 자녀로그 자녀</u>
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	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
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	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세 미
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	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
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u>다</u>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	
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